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에 대형소방헬기 도입됨에 따라 운용인력 15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소방사 2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의료 복지 증진과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신설되는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의 필요인력 2명(소방정 1, 소방위 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중앙119구조본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장의 통솔범위와 책임성을 고려하여 직급을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조정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4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장(제1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한시조직

제13조(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 ①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1의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의 위치란 “충청남도 천안시”를 “충청북도 충주시”로 한다.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	충청북도 충주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	----------	------------------------------------

별표 6은 “제2호를 삭제”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신설한다.

별표 4 중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69”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5”를 “6”으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를 신설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0”를 삭제한다.

별표 5 중 총계 “426”을 “441”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378”을 “384”로 하며, 소방정 “6”을 “7”로 하고, 소방령 “25”를 “24”로 하며, 소방위 “62”를 “63”으로 하고, 소방장 “74”를 “75”로 하며, 소방교 “91”을 “93”으로 하고, 소방사 “79”를 “81”로 하며, 일반직 계 “48”을 “57”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조종담당) “6”을 “12”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정비담당) “3”을 “6”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12조 관련)

1. 소방청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119구조구급국 장비기획과	7명 (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3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소방정책국 소방분석제도과	3명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소 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위 1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 <신설>

소방청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3조 제2항 관련)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준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소방직 계	2
소방정	1
소방위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소방정책국) ① ~ ③ (생략)	제3조(소방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화재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삭제	
2. ~ 13. (생략)	2. ~ 13. (현행과 같음)
14. <u>한국소방안전협회</u> 등 소관 업무 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육성 및 지원	14. <u>한국소방안전원</u> ----- ----- -----
15. 삭제	
16. ~ 22. (생략)	16. ~ 22. (현행과 같음)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4 제2호와 같다.	제1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7장 한시조직

제13조(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

①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4]

중앙소방학교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 • 69	• • <삭 제>	-69
• • 일반직 계	• • 5	• • 6	+1
• • 행정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재 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 • <신 설>	• • 1	+1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	<삭 제>	-1.0
일반직 계	1.0	<삭 제>	-1.0
행정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재 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0	<삭 제>	-1.0

[별표 5]

중앙119구조본부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26	441	+15
소방공무원 계	378	384	+6
소방정	6	7	+1
소방령	25	24	-1
소방위	62	63	+1
소방장	74	75	+1
소방교	91	93	+2
소방사	79	81	+2
일반직 계	48	57	+9
전 문 경 력 관	6	12	+6
나군(항공조종담당)	3	6	+3